

개정 2012. 04. 1

3. 대부금융광고

□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대부금융협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금융회사 및 대부금융중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부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와 대부금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 가. 신문, 잡지, 회보 등 간행물
 - 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 다.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 라. 전단, 리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 마. 포스터,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대부금융 광고심의위원회(이하 “광고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2. “대출광고”라 함은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
3. “비대출광고”라 함은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이미지광고, 채용 광고, 공시광고 등을 말한다.
4. “영상광고”라 함은 극장 및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DMB방송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5. “기타광고”란 신문, 잡지포스터, 전단, 리플렛, 현수막,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등 영상 매체를 제외한 수단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제3조(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 ① 광고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이하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라 한다)의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고의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매체에게 광고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광고가 휴대폰 스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광고인 경우,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해당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등록의 확인 의무)

회사는 광고 게재시, 광고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등록증 제출 등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2장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

- ①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장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협회의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2.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3.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신문 또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 PD 등 언론인
 5. 회사 관련 업무분야 담당 임원 (광고담당부서, 소비자보호부서)
 6.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
- ④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2호, 4호 및 5호의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해직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해당업무 후임자가 위원직을 수행한다.
- ⑤ 광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37조의 제재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광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결방법)

- ① 광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광고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광고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 업무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급)

협회는 광고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임)

광고위원회는 대부금융광고 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이미 심의 받은 광고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하는 경우 등 기타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등)

광고위원회는 광고물의 심의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거나,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광고의 심의 및 절차 등**제1관 대출 광고의 심의****제12조(사전 심의)**

회사는 대출광고를 영상광고로 제작·배포하고자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광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사후 심의)

- ① 회사는 대출광고를 기타광고로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는 대출 광고를 제작·배포하기 전에 광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② 광고위원회는 회사가 전항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2관 광고심의 절차

제14조(광고물의 심의)

- ① 회사가 광고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광고 담당 책임자에게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고담당책임자는 대출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대출광고를 배포하기 전에 제12조 및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광고위원회에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대부금융광고심의신청서(이하 "광고신청서"라 한다)에 광고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광고담당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광고시안과 함께 협회 광고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광고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광고위원회의 자료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한다.
- ⑤ 광고위원회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통보)

- ① 광고위원회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광고
 2. 조건부적격: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광고
 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광고
- ② 광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 심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심의필을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2조에 의하여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의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한다.
- ⑤ 회사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회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달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변경안을 제14조제2항에 따라 즉시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안의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여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 ⑦ 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심의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심의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위원회의 심의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광고물의 심의필 표시)

회사는 심의 받은 광고물에 광고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였다는 심의필을 별표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능한 광고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관계법령, 약관 및 대부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제18조(이의신청)

- ① 회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10영업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광고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을 요청한 날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대출광고 가이드라인

제1절 통칙

제19조(대부조건외의 광고)

- ① 회사가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및 본 규정 별표2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광고문안은 글자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이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대출광고를 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④ 회사는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광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 심의필의 표시.
 2. 협회원 번호.
 3. 협회 마크.

제20조(광고 문안과 표기 방법)

- ①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광고문안을 표기할 때,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표시하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상호

의 글자와 크기를 같게 표기해야 한다. 특히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

- ③ 광고위원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상품광고에 표시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소비자보호)

- ① 회사는 정부의 대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금지행위)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대부금융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자율 등 대부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회사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고객이 대부이자율을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가.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내' 로 표시한다. 단, '연 0%~0%' 식의 구간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특정이자율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함께 표시한다.
 - 나. 이자면제 이벤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0일 면제'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면제받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함께 표시한다.
3.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신용무관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보장' 등의 문구
 - 나. '소득과 재산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
4. 여신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 또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5. 업계 최고, 최저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협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회사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제2절 텔레비전 광고 등 영상광고

제23조(대출 조건 등의 표시)

- ① 회사는 대출광고인 텔레비전 광고 등 영상 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을 전체 광고 시간의 5분의 1이상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주의 문구)

- ① 회사는 대출광고인 영상 광고를 실시할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경고문구와 함께 계약내용의 확인, 과잉 대출, 계획성이 있는 대출에 대한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요소로 한 문구를 하나이상 표시할 수 있다.
 1. 대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2.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3. 대출은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4. 과도한 대출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전항에 규정된 주의 문구를 표시함에 있어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대출 조건 표시와는 별도로 표시할 것
 2. 주의 문구 표시는 글씨체는 고딕체로 하고,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표현 내용)

회사는 영상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무분별한 대출, 비합리적인 소비를 조장 하는 표현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표현
 < 문구 예 >
 - '명품 가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품 대출을 이용하십시오' 등의 표현
2.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3. 노골적으로 성이 연상시키거나 지나치게 노출하는 표현 등
4. 시각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표현

제26조(방송 시간대 및 방영 프로그램에 관한 유의 사항)

회사는 대출광고인 영상광고를 지상파TV 또는 케이블TV 등에 실시함에 있어 어린이, 청소년 채널에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3절 신문,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 광고

제27조(대출 조건 등의 표시)

- ① 회사는 신문, 잡지 등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 ② 전항의 사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해당 광고의 최대글자 대비 최소 3분의 1 이상 크기로 하고, 컬러광고는 글자색을 배경색과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의 문구)

- ① 회사가 신문이나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와 같다.
- ② 회사는 전항에 의거한 표시를 할 경우 7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주의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표현 내용)

회사는 신문이나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와 같다.

제30조(광고 매체)

회사는 신문이나 잡지에 대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매체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박 전문 신문 또는 잡지
2. 유흥업 관련 전문 신문 또는 잡지
3.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신문 또는 잡지

제4절 전단지 광고, 명함식 광고

제31조(신문 또는 잡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회사가 전단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인터넷 광고

제32조(홈페이지에 명시할 사항 등)

- ① 회사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대출에 관한 상품을 소개하는 메인 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1. 제19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대부(중개)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의 연결배너
- ② 배너 광고 등을 통하여 자사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유도한 자사 홈페이지에 전항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 ③ 법 및 시행령상의 필수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최초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유흥업이나 도박 관계의 홈페이지 및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홈페이지에 대출과 관련된 광고를 출고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제재조치 등

제1절 시정요구 등

제33조(광고검토결과 협회제출)

광고위원회는 회사 광고담당책임자의 사전검토를 필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광고담당책임자가 행한 광고·선전물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광고물의 실태점검)

- ① 광고위원회는 회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광고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광고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의 보존 등)

- ① 회사는 광고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광고 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신고서에 따라 광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요구 등)

- ① 광고위원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3. 당해 회사에 대해 주의경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광고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의 경우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결과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광고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4. 제34조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에서 이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2절 제재조치

제37조(제재조치)

- ① 광고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정한 심의대상 광고·선전물을 심의 받지 아니하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3.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인과 다르게 광고 행위를 하거나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한 경우
 4. 제36조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의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뚜렷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광고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⑥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 제재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게시한다.

제38조(제재금의 납부)

-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제재가 확정된 때에는 광고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광고위원회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제재금의 용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이 규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 ① 대부금융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협회장에게 위임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의 서식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배포하는 대출광고에 시행한다.

[별표 1]

심의필 및 경고문구 표시방법

- 광고물의 심의필 표시는 일반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글씨크기 7포인트(A4 용지 기준) 이상
 - 나. 본문글씨가 12포인트 이상인 경우 심의필 글씨는 10포인트 이상
- 예시)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의필 제○○호(○○○○년 ○○월 ○○일)

[별표 2]

대부금융 상품광고 의무 표시 사항

1.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에 표시한다.
2. 대부금융회사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3.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하며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대부업등의 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본점 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4. 방송(라디오 제외)을 통한 대부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 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 시간의 5분의 1이상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